

<p>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58호(1994.1.10)의 부칙 제5항중 “1994년 3월”을 “1994년 6월”로 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置條例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上程 順序대로 一括 報告해 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現行 條例에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 設置根據를 新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는 審査한 바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對象者를 公正하고 慎重하게 選定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42條의 規定에 의거 諮問機關을 設置하기 위한 根據規定을 新設하고자 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地方行政事務官을 地方教育行政事務官으로 하고, 地方行政主事를 地方教育行政主事로 하고, 地方行政主事補를 地方教育行政主事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地方公務員任用令의 改正(大統領令 第14042號 1993年 12月 31日)으로 地方教育行政 職列이 新設됨에 따라 5級 이하의 職級名稱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을 妥當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 및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 中 地方行政事務官을 地方教育行政事務官으로 職級名稱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地方公務員任用令의 改正(大統領令 第14042號 1993年 12月 31日)으로 地方教育行政 職列이 新設됨에 따라 職級名稱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
<p>12.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13.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14.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15.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16.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(16時 01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, 議事日程 第13項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, 議事日程 第14項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, 議事日程 第15項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, 議事日程 第16項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, 以上 5件을 一括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文化教育委員會 李永輔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李永輔議員 안녕하십니까? 尊敬하는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文化教育委員會所屬 李永輔議員입니다. 1994年 2月 17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2月 21日 議長으로부터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4年 3月 4日 서울特別市教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</p>	<p>置條例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上程 順序대로 一括 報告해 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現行 條例에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 設置根據를 新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는 審査한 바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對象者를 公正하고 慎重하게 選定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42條의 規定에 의거 諮問機關을 設置하기 위한 根據規定을 新設하고자 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地方行政事務官을 地方教育行政事務官으로 하고, 地方行政主事를 地方教育行政主事로 하고, 地方行政主事補를 地方教育行政主事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地方公務員任用令의 改正(大統領令 第14042號 1993年 12月 31日)으로 地方教育行政 職列이 新設됨에 따라 5級 이하의 職級名稱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을 妥當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 및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 中 地方行政事務官을 地方教育行政事務官으로 職級名稱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地方公務員任用令의 改正(大統領令 第14042號 1993年 12月 31日)으로 地方教育行政 職列이 新設됨에 따라 職級名稱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